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첫째로, 신청인의 학업 발전을 위하여 본교 CSE 선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교 CSE는 미 연방법에 따라 비 이민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공인된 기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학생비자 (F1 VISA)를 소비하기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학생비자(F1 VISA)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학생 VISA 규정에 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입학에 관련하여 부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E-MAIL주소, 저희 국제입학담당자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fo@englishamerica.com

➤ 개요

- 신청인은 본교에 신청서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신청인은 본교로부터 I-20(입국허가서)를 송부 받게 됩니다. 신청서, 통장잔고증명서

그리고 I-20등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사관에 출석합니다.

- 미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부터 서식과 정보를 얻도록 하세요.

<http://usembassy.state.gov>

- SEVIS fee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부 받는다. (만일, 입학신청서류에 본교CSE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길 기재한다면, CSE는 본업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여 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서 서식을 아래의 사이트에서 프린트합니다.

<http://evisaforms.state.gov>

- 비자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SEVIS fee를 납부하는 것과, 영수증을 받

부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계산하고 비자인터뷰 날짜 정하도록 합니다.

- 비자인터뷰를 준비합니다. 아래의 조언을 주의 깊게 읽도록 합니다.
- 지금까지의 경과를 본교에게 알려주세요. info@englishamerica.com
- 미국에 입국 합니다. - 아래의 정보를 주의 깊게 읽도록 해 주세요.

STEP 1 – SEVIS fee 지불에 관하여

신청인의 비자인터뷰를 위해 미 대사관에 출석할 때, 신청인은 꼭 SEVIS fee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SEVIS fee 은 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F1 VISA)가 발급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200.00 입니다. 피부양인에게는 세금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SEVIS fee을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관한 좀더 자세한 정보와 설명은 USICE 웹사이트 <http://fimfee.com>

SEVIS fee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기까지의 소요시간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1. 신청인이 Form I-901을 받기까지의 ;(I-901FORM 은 비자 신청 시 지불한 SEVIS FEE를 잘 받았다는 영수증입니다.) , SEVP에 SEVIS fee 지불하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에 따라
2. SEVP 지불을 처리하는 대에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에 따라
3. 본인이 SEVIS fee영수증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에 따라

SEVIS fee(\$200.00)를 납부하는 것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온라인을 통하여 I-901 서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신용 혹은 직불카드로 (온라인상에서) 지불이 가능합니다.

1.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to file your FORM I-901 ON-LINE 과 신용 혹은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후 신청인은 곧바로 SEVIS fee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 Western Union 을 통하여 지불하기. Western Union은 빠른 송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느 국가에서도 외화를 빠르게 송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비자인터뷰에서 SEVIS fee 지불여하를 즉시 증명하는 것을 도울 것 입니

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graphics/sevis/i901/wu_instr.htm

3. 신청인은 I-901을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할 수 있으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에게 메일이 다시 돌아 갈 때까지 최소한 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자우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를 통하여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fmiffee.com>

*1- 보기: Form I-901을 작성할 때 신청인은 두 가지 번호가 필요 할 것입니다.

- SEVIS ID 번호 는 본인의 I-20 (입국허가서)의 오른쪽 코너 끝에 위치해있습니다.
- CSE'S School ID 번호는 DEN214F00708000

STEP 2- 미 대사관과의 인터뷰 날짜 예약 합니다.

만일 본인이 학생비자에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비자인터뷰는 필수 사항일 것입니다. 6,7 그리고 8월은 대체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시기 동안에는 비자인터뷰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자 계획이 세워지자마자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계획하고 예약을 진행할 때까지 몇 주 가량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본인은 직접 미 대사관에 전화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상세 자료 혹은 지시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http://www.travel.state.gov/visa/tempvisitors_wait.php

본인은 SEVIS fee를 지불하는 것 과 영수증을 발부 받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번역가 혹은 통역사를 신청자의 비자인터뷰 동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비자 인터뷰 전 준비

미 대사관으로부터 Form DS-158과 Form DS-156 얻은 후, 비자인터뷰 날짜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비자인터뷰에 출석할 때, 아래의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여 출석하세요.

- 본교 CSE에서 송부 받은 Form I-20와 본인의 CSE입학허가서
 - 완벽히 준비된 Form DS-158과 DS-156 비 이민비자신청서 와 비자신청용 사진 한 장. 이 구비서류들은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미국 체류기간보다 6개월 이상 더 유효한 여권)
 - 비자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용지 우측상단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 SEVIS fee 납부 영수증
 - 신청자가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재정적 여유를 증명하는 구비 서류입니다.
- I. 재정보증인의 은행통장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장학금증명서 등 (“본인은 분명 돈의 경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CSE로 부터 송부 받은 입학허가서(I-20원본)

“본인이 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세요.

1. 신청자는 고국에 돌아갔을 때, 영어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중요한가요?
2. 본교의 영어 프로그램이 끝난 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무엇이며, 영어가 신청자에게 꼭 필요합니까?

본인과 본인의 고국간의 유대관계와 연관성을 증명합니다. & 고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언급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미국으로 이민 갈 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각 신청자는 자신들이 미국에 이민 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민관 앞에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미국으로 이민 갈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즉, 신청자가 자국 내에 확실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자 심사관은 인터뷰를 통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미 영사에게 신청자에게 가족, 즉 충분하고 확실한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기반관계 혹은

은 연관성을 증명 하는 것 은 중요합니다. 이 같은 관계들은 본인이 모든 학업계획을 미국에서 마치고 본인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돕습니다.

아래는 신청자의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도움이 될 보기입니다.

1. (만일 본인의 가족이 사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고국에 돌아갔을 때, 당신이 직업을 제안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한국에서 본인의 졸업과정을 수료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3. (만일 소지하고 있다면)본인의 가족이 국외에서 유학 혹은 여행경험이 있으며 후에 다시 돌아 왔음을 증명합니다.
4. (만일 소지하고 있다면)신청자가 학습자 혹은 여행객으로서 국외 여행 경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준비합니다.
5. 신청자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 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정부임원 <학장, 시장, (미국의회의 하원·국회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식.
6.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소유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STEP-4 인터뷰에서

본인은 비자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영사를 공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확실한 재정적 이유에서 미국에 가고 싶어함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영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혹은 더 좋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영어능력이 필요함을 확실히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미리 영어공부를 고국에서 배움으로써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집중적인 환경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또 모국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의 가능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언어교육 속의 가장 고급의 교육방법과 기술적인 도움 미국에서, 본교CS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모국어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 신청자가 선택한 영어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신청·접수한 학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선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신청자의 친구가 혹은 가족이 미국에 있음으로,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탓에 본인이 미국에 가고 싶어함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 이민비자 즉 학생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미국에 일시 체류 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여건, 즉 충분하고 확실한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기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비자 발급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하고 완전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 고국에 신청자의 거주기가 있음을
- 그 거주지에 다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 신청자는 학업을 모두 수행한 후, 본인의 고국에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신청자의 생각에 설령 영사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본인은 영사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대답하여야 합니다. 영사는 본인이 본인의 모든 학습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본인이 미국에 머무르려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Remember: 만일 영사가 본인이 영구적으로 계속 미국에 머무르려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영사는 본인의 비자신청을 거절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신청자, 본인이 확실히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감을 증명하며 동시에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보일 경우, 본인의 비자신청은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학생비자 (F1visa)는 오직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생활할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미 대사관/영사에게 항상 정직하게 서술합니다. 만약 그들이 본인의 서술에서 혹은 구비서류에서 사실을 왜곡했음을 발견할 경우, 이번 한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본인은 미국에 입국하기 힘들 것 입니다.

STEP5- 미국에 도착.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분명히 본인의 여권과 입국허가서를(I-20) 확실히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입국허가서(I-20)에 기재된 날짜보다 전에 혹은 기재날짜까지 입국해야 합니다.
- 비자를 받은 후, 학교 시작일 30일 이전 미국 입국 불허
- 신청자는 자신의 학업이 모두 끝난 일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여행을 할 시, 신청자는 항상 자신의 I-20와 I-94 를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Upon arrival

비자를 지참하여 미국을 여행 오는 방문자들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국가안보절차 시스템인 잉크가 없는 지문인식장치와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새로운 국가안보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http://www.dhs.gov/interweb/assetlibrary/Pamphlet_BW_Web.pdf 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국토안보 부 웹 사이트를 통해 입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hs.gov/us-visit>

세관을 통과할 때 신청자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그때, 본인은 필히 본인의 입국허가서(I-20), 여권, 비자(F1), 그리고 통장잔고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짧은 인터뷰에 대비하여 간단한 대답을 준비합니다. 신청자에게 미국에 가는 주요이유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인의 학생비자는 비 이민비자 이므로 학업을 모두 마

친 뒤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신청자의 가족이 살고 있다면, 본인은 재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인터뷰 도중 본인이 무엇이든 문제를 얻게 된다면, Patrick Stirn 혹은 본교의 PDSO/DSO 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720) 932-8900 – Monday-Friday, 9:00am – 4:30 pm

(917) 470-7490 – all other times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WHEN YOU ARRIVE!

Have a safe journey!

만약 신청자의 비자가 거부된다면, 다시 시도하세요.

대부분의 비자 신청은 허가 받는 것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 또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미국비자 거절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민 갈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만큼 충분한 기반이 자국 내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거부되었을 시, 신청자는 영사에게 정중히 이유를 묻고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묻고 만일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도록 합니다.

또한 본교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알리고, FAX(fax number is: 720-932-0315)를 통해 재정증명서와 본인이 영사에게 보여준 다른 자료들을 본교에게도 보여주신다면 저희도 신청자의 입국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 입니다.

신청자의 비자가 거부 되었을 시, 신청자는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게는 처음보다 더 확실한 증빙서류를 지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자 심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청자의 한국 내에서의 기반입니다. 비자신청 시 신청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미국비자를 받으시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정중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에서 일시 체류 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확실히 언급합니다. 추가적 자료, 정보를 사용하여 본인의 언급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다르므로 어떤 증명이 영사를 설득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본인과 고국의 연관관계, 가족유대관계, 직장, 신청자의 사회적 기반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합니다.

최근을 기준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 신청자 본인의 부모님 혹은 가족이 본인의 학업에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재직증명서, 통장잔고증명서, 통장복사본 등으로 증명합니다.
- 미국에 있는 신청자의 가족이 본인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청자는 그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까? 본인은 미국의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본인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명세표, 법률서류, 세금보고서)
- 신청자는 첫 번째 비자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진술 했습니까?
말하는 것을 연습하지 말되, 명확하며 설득력 있게 영사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 확실하며 명확하게 영사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까? 첫 번째 인터뷰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아마도 신청자는 영사가 호의적으로 판단할 추가정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본인의 두 번째 시도가 거부된다면, 세 번째 시도에 성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 신청 시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논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빙서류를 필요로 합니다.